##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

세부(내역)사업명	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(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)	접수	수번호	
연구개발과제명				
주관연구개발기관			연구책임자	
연구개발기간	2023. 5. 1	. ~	2023. 12. 31.	(8개월)

번호	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		점검 결과	
다포	그런증법 판ㅠ ㅊ 답시기판	예	아니오	
1	「방위사업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			
2	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회를 추진 중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			
3	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			
4	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※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- 국가핵심기술: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			
5	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			
6	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			
7	(기타 연구개발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)			

최종 확인 결과 :	□ 보안과제	□ 일반과제
※ 상기 검토 결과, 한	가지 항목이라도 "예"가 있을	: 경우, 보안 과제로 분류

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제출일자: 2023. 4. 00.

연구책임자: (인)

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: (인)

##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

- ※ 과제는「보안과제」또는「일반과제」로 구분하며,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함
- ※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 제2항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함
- ※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